

11. 住居環境改善事業地區 住民 設問調査

資料提供：建設部

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호응도 높아!

- 정부는 “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”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 주민에게 동사업과 용자지원에 관한 안내문 및 설문지를 매 가구마다 배포하고 동사무소 직원 등이 현지주민을 일일히 방문하여 면담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이 사업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과 반응을 알아보았다.
- 건설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의하면, 전국 28개 시에 있는 70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내 주민 13,595가구에 대하여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 응답자 9,669명중 7,592명(78.5%)이 주택개량 의사를 확실히 보이고 있으며, 이들 주택개량 희망자 중 7,279명(95.9%)은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저리의 용자금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- 이에 따라 정부는,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동사업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매 사업지구별로 지역담당 책임자를 지정·배치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, 안내, 행정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주민 자체적으로는 대표기구를 구성토록 하여 지구별로 사업시행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들의 적극적 협조·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동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.
- 정부는 앞으로도, 동 사업이 착수되는 지구마다 주민 설문조사를 계속 실시하여 지구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촉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.

별첨 1.

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

1. 총 괄

시 도	조사지구 수	조사대상	응답자 (A)	개량의사 (B)	비 율 (B/A) (%)	응자희망 <C>	비 율 (C/B) (%)	비 고
계	70	13,595	9,669	7,592	78.5	7,279	95.9	
서울	14	2,317	1,821	1,490	81.8	1,458	86.7	
부산	4	2,810	2,146	1,682	78.4	1,634	97.1	
대구	4	1,638	923	702	76.1	658	93.7	
인천	3	342	258	230	89.1	227	98.7	
광주	4	721	380	265	69.7	265	100.0	
대전	4	601	461	372	80.7	363	97.6	
경기	6	1,751	967	819	84.7	760	92.8	
강원	4	416	294	150	51.0	124	82.7	
충북	7	838	731	537	73.6	473	88.1	
충남	-	-	-	-	-	-	-	
전북	8	925	644	438	68.0	426	97.3	
전남	3	80	80	70	87.5	69	98.6	
경북	4	351	278	188	67.6	180	95.7	
경남	5	805	686	649	94.6	642	98.9	
제주	-	-	-	-	-	-	-	

2. 내 용

◎ 대상자: 불량주택개량대상 토지·건물소유자 세대주 총 13,595명

◎ 응답자: 9,669명

◎ 설문 결과

주택개량여부	예			아니오					
	7,592명			2,077명					
	개량 않는 이유	주택 양호	자금 부담	방법 절차	수입 감소	기타			
		731명	725명	87명	117명	417명			
용자희망여부	예			아니오					
	7,279명			313명					
용자희망금액	500만원 이하	501~ 1500만원	1501만원 이상	용자 불요 사유	자금 충분	방법 절차	용자 부족	상환 부담	기타
	280명	3,505명	3,494명	82명	21명	71명	86명	53명	

◎ 주택개량을 않는 사유중 기타란의 주요내용

- 재개발사업등 다른 사업방식을 원하므로
- 타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므로

◎ 용자를 받지 않는 사유중 기타란의 주요내용

- 타인소유의 대지로 담보설정이 곤란하므로
- 담보설정시 재산권행사가 불편하여

◎ 사업에 대한 의견중 빈도가 많은 내용

- 소방도로등 기반시설 확충 요망
- 가구당 용자한도액 증액 희망

1. 추진배경

-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은 전국에 있어 502개지구(163천동)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바, 동지역은 도로·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불비하고 도시계획·건축기준 등의 제약으로 주택개량마저 불가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므로
- 이 지역, 소위 “달동네”에 사는 영세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'89. 4. 1 “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”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으며,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이 '89. 8. 10 공포됨.

2. 사업내용

- 도시영세민이 기존의 생활터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을 현지에 정착시키면서 생활환경의 개선과 주택개량 등을 추진
 - 도로·상하수도등 공공시설정비(지자체)
 - 주민희망에 따라 주택개량(주민자력) 또는 공동주택건설(지자체·주공)
- 사업자금등 지원(정부)
 - 주택개량자금 융자(재특: 호당 300만원 기준, 연리 6% 1년거치 19년상환)
 - ※ 신·개축시 재특자금 외에 국민주택기금(호당 900만원까지, 연리 10% 1년거치 19년상환) 추가지원
 -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및 국·공유지 불하
 - 건폐율·용적율 등 건축규제 완화

3.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

'91. 11 현재

시·도	대상지구	입안공고	지구지정	사업착수		비 고
				기반시설	주택개량	
총 계	502	242	170	67	60	
서울	79	79	47	0	21	
부산	162	18	16	12	7	
대구	47	15	18	7	7	
인천	28	15	14	10	7	
광주	13	7	5	3	1	
대전	15	5	5	2	2	
경기	34	23	17	6	3	
강원	8	8	6	3	0	
충북	9	6	6	0	0	
충남	2	2	1	1	0	
전북	33	17	9	6	1	
전남	27	22	7	5	3	
경북	19	5	4	3	2	
경남	24	18	14	8	6	
제주	2	2	1	1	0	